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 일시 : 2015년 10월 21일(수) ~ 22일(목)
-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개 요

- (일 자) 2015. 10. 21(수) ~ 22(목)
- (장 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대 상) 총 40명 내외
  -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기타 청소년현장 및 학계 전문가
-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현안 논의
  - 지역별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사례 공유
  - 향후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방안 모색
-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사회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일차	12:00	중식 및 등록
	14:00	참석자 소개(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10	축사(박철웅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원장)
	14:20	기조발표(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40	사례발표 ① 석 철(대구시 수성구 구의원) ② 배인성(부산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③ 최진용(경주시청소년수련관)
	15:30	질의응답
	16:00	분임토의(1)
	18:00	만찬
2일차	08:00	기상 및 조식
	09:00	2일차 오리엔테이션
	09:30	분임토의(2)
	11:00	종합토의
	12:00	중식
	14:00	폐회

사례발표1



**대구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채용사례**

석 철 (대구시 수성구 구의원)

#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채용사례

석 철 (대구시 수성구 구의원)

## ○ 추진 배경

-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2년 정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다가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현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연속적이며 전문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
- 순환보직은 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 업무 담당자는 소수인 관계로 청소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강함.
- 이에 따라 청소년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에서 벗어나 청소년육성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실정임.
- 다행스럽게도 수성구는 의원발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2011년 8월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 2011년 8월에 제정되었으나, 지난 4년간 두 차례의 조례 일부개정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전담공무원을 채용하지는 않고 있었음.
- 2015년 5월,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지 4년이 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즉각 시행하자”는 의원의 권고에 대하여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
- 2015년 9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음.

## ○ 향후 계획

- 2015년 11월 중순경부터 채용절차에 들어가 201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청소년 업무를 전담할 예정임.
-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도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정원 포함)에 적용을 받는 바, 기존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빠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나, 이 전담공무원이 퇴직 또는 휴직할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최초의 전담공무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1명의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복수의 청소년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 단계가 지나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 보며, 청소년육성전담기구가 처음에는 청소년 담당부서의 하나의 계(팀)으로 시작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체장(혹은 부단체장)의 직속기구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 판단하고 있음.

## <관계법령>

### 1.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 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 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 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췌)

#### 제4장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 제19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청소년대회의 시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1. 구가 주최하는 각종 청소년 대회
  2. 구가 대회 비용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각종 청소년 대회
  3. 국가가 권장하여 국·시비를 지원하는 각종 청소년 대회
- ② 청소년대회 입상자의 등위는 1위, 2위, 3위로 구분하고, 대회의 성격에 따라 대상 또는 최우수선수상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상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대회 공고에 참가대상, 부분별 시상 내역, 등위 결정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참가 대상이 같고, 대회의 종목이 일치하는 청소년대회가 연 2회 이상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청소년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공로가 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우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례발표 2

.....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의 사례와 제도 정착의 필요성

배 인 성 (부산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의 사례와 제도 정착의 필요성

배 인 성 (부산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선배님, 후배님들 앞에서 감히 한 말씀 올리게 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선배, 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제출하였던 저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 정착에 대해 몇몇 자료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엔 청소년업무와 상관없는 민간기업에서 잠시 몸을 담았다가 진정으로 청소년분야의 업무를 하고 싶어 1999년에 부산의 민간위탁 시설인 부산합지골청소년수련관에 첫발을 디딘 이후로 줄곧 17년간 청소년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근무하면서는 기관장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아 고민을 하던 중, 부산의 변두리였던 기장군의 직영시설의 청소년 담당 별정직공무원 채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청소년수련활동 종합계획서를 열의와 성의를 담아 수립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학생교육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도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장군에서는 채용을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고(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기장에 거주하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자료 채용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계속 검토중이었음), 서울학생교육원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간 업무적응을 하는 중 부산 기장군에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몇 일간 고민했었습니다. 서울학생교육원의 수련활동 교육방식이 썩 마음에 들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마음이 맞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교육원을 퇴사하고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내려와 기장군 직영시설인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 별정8급으로 입사하여, 정말 혼신을 쏟아가며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치지도사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행사 진행도 해야 했으며, 수련활동 진행도 혼자서 진행하며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고달팠지만, 보람도 있었던 시절이었던 같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서는 청소년행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기획한 가족캠프때는 자주 참석하셔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자주 격려해 주셔서 힘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 2급 청소년지도사에서 1급 청소년지도사로 자격증 업그레이드도 하고, 입사 4년 만에 7급으로 재 채용되었고, 7급 된지 6년 뒤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될 때 군청 청소년보호·육성·시설담당자로 인사발령이 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이순간도 청소년계 라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초심과도 가까운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만큼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라는 제 일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 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의 조항에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란 시·군·구의 청소년정책부서 또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특화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필요함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요즘 전담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 때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존 별정직 공무원은 전문경력관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정작 승진과 겸임 그리고 파견 등 제반 분야에서 여전히 기존 차별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어 '무늬만' 일반직 공무원화 하였습니다.

이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별정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통합이라는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이 가져야 할 기회 균등 및 공무담임권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봉쇄 배제되고 있어, 한 마디로 현대판 카스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승진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관료 사회의 차별적 사고방식에 의한 관행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왜 승진을 하는가? 전문성이 없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논리라 하겠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했다면, 일원화된 공무원은 당연히 모두 동일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정확하게 부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시험 위주로 선발되는 현재의 공무원 제도는 임용 제도의 다원화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 그들이 공무원 시스템에서 장벽과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전문성'이 승진의 가산점이 되지는 못할망정 이처럼 신분 차별의 족쇄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시대정신에 역행하여 거꾸로 가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경력관의 승진, 파견 등을 배제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25000호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임용령의 적용) 조항은 이러한 현 관료제도의 독점적이고 전문가 배제라는 특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 사회의 관료제도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전문경력관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지만,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전담공무원분들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잠시 소개 드렸습니다.

‘청소년을 보여다오!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 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 한 철학자의 말처럼 청소년육성은 가까이 있는 현재의 우리를, 멀리로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청소년육성은 전문적인 접근으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시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일선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전담공무원 제도를 조속히 서둘러 정착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전담공무원 및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관료가 적고,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대한 보장이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을 올바르게 펼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정책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 사안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의 정착이 하루 빨리 시행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복지가 제공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 사례발표 3



# 지방 청소년 행정체계 활성화 방안

최진용 (경주시청소년수련관)

# 지방 청소년 행정체계 활성화 방안

최진용 (경주시청소년수련관)

국가 청소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생활 현장에 전달하는 지방 청소년 행정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 청소년 행정은 청소년 행정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 및 맥락을 고려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앙 및 지방 청소년 행정 조직체계 현황, 지방 청소년 행정의 중점업무 및 담당부서,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청소년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 청소년 행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정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청소년 정책에 행정력을 더욱 할애하려는 노력과 행정조직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정업무의 중요업무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화·체험활동과 인성 및 사회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지방 청소년 행정업무가 지식교육과 복지·보호 업무 보다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 청소년 행정의 중점 과제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행정이 청소년 문제의 사전예방 및 보호차원과 이미 발생한 문제를 치유하고 재활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여러 자산(문화활동, 민주시민 의식 등)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청소년육성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업무부서는 사회복지와 문화체육 부서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으나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소년 업무는 독립된 부서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독립된 청소년 부서에서 청소년 업무가 수행 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청소년 실(과)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청소년 실(과) 또는 2담당(청소년육성, 청소년복지·보호) 체계의 행정 조직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의 법규정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교하여 매우 중요하고 업무의 전문성도 높았다. 또한 전문적인 청소년행정을 위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청소년정책의 현안문제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청소년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가 전문경력직 또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 청소년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청소년계의 일각에서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있으나 청소년 업무의 주인은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이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법제화 되어있고 또한 지방 청소년 행정업무가 중요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매우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행정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전담공무원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임용되어 지방 청소년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청소년정책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권 청소년수련

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을 위해 한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기존의 시설·공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역할을 담당하여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한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 체계로 가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청소년 정책사업(활동, 상담, 보호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청(학교)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학자 등), 시설 및 단체 등과 업무의 연계협력 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이 낮은 이유로는 교육청과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편 교육행정이 많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청과 학교도 열린 교육행정으로 지역 청소년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청소년 행정은 지역 청소년관련 전문가, 단체의 적극적인 연계협력 의지부족으로 인해 연계협력이 낮았다. 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 전문가와 관련단체는 지방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 청소년을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지역 청소년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계·협력 네트워크 시스템(거버넌스)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 청소년 행정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또한 가정과 학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연계·협력 그리고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부 록

1. 청소년 기본법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3. 참석자 명단
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전체 현황

# 부록 1 : 청소년 기본법(발췌)

[시행 2015.9.23.] [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 부록 2 :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 정) 2011.08.01 조례 제842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869호  
(일부개정) 2014.04.30 조례 제9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용권자)**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구청장은 행정수요와 구청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4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청소년활동 및 복지에 관한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3. 청소년 복지의 향상
4.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5.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6.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

- ③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형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에서 규정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제6조(지역제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시험공고일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7조(임용자격 등)** [제목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 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869호)
- ②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9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구청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1. 청소년육성 직무에 관한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청소년육성에 대한 시험출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청소년육성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1조(근무상한연령 및 당연 퇴직)**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12조(직권면직)**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14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15조(전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7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② 휴직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9조(시간제 근무)**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조례 제986호>

**제20조(징계)**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21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삭제 2014.4.30 조례 제986호]

**제22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조례 986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조례 제986호,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3 : 참가자 명단

### 1.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NO	성명	소속
1	배인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2	박나연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3	남윤경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공보과
4	류양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과학과(청소년과)
5	박경수	경기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6	김운상	경기도 포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청소년팀 포천청소년교육문화센터
7	김정민	경기도 포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청소년팀 포천청소년교육문화센터
8	조계형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청소년수련관
9	김영이	경기도 통일부 교류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0	오제상	경기도 통일부 교류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1	이순원	경기도 통일부 교류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2	김윤희	경기도 통일부 교류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3	서미교	경기도 통일부 교류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14	조한수	강원도 강릉시 체육청소년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15	정운학	강원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삼척시청소년수련관
16	김서독	강원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도계청소년장학센터
17	홍혜만	강원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원덕청소년문화의집
18	권태영	강원도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19	이운선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20	하창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생학습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
21	최진용	경상북도 경주시 체육청소년과 경주시청소년수련관
22	임진섭	경상북도 경주시 체육청소년과 경주시청소년수련관
23	허상훈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교육문화회관
24	권도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청소년수련원

## 2. 전문가

NO	성명	소속
1	석 철	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전성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3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4	신명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5	이민희	평택대학교 교수
6	김 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7	김제원	대구시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사무국장
8	한도희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9	김성훈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10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역량연구실장

## 부록 4 : 한국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현황

NO	시도	시군구	성명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배인성	인재양성과	051-709-5481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김대수	금련산청소년수련원	051-610-3222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공금남	금련산청소년수련원	051-610-3227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신민수	금련산청소년수련원	051-610-3226
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강대하	금련산청소년수련원	051-610-3226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박나연	교육청소년정책관실	053-803-4045
7	대전광역시	동구청	남윤경	문화공보과	042-251-4244
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고광희	교육과학과(청소년과)	042-611-2133
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류양희	교육과학과(청소년과)	042-611-2248
10	강원도	강릉시청	조한수	체육청소년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033-640-4794
11	강원도	강릉시청	김광일	체육청소년과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033-640-4955
12	강원도	강릉시청	김도현	체육청소년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033-640-4794
13	강원도	강릉시청	박성문	체육청소년과 강릉시청소년수련관	033-640-4794
14	강원도	삼척시청	정운학	사회복지과 삼척시청소년수련관	033-570-4493
15	강원도	삼척시청	김서독	사회복지과 도계청소년장학센터	033-541-0605
16	강원도	삼척시청	홍혜만	사회복지과 원덕청소년문화의집	033-575-1498
17	강원도	횡성군청	신금예	주민지원과 횡성군청소년수련관	033-340-5871
18	강원도	양양군청	권태영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926
19	강원도	태백시	손미성	태백시청소년수련관	033-554-0411
20	경상북도	경주시청	최진용	체육청소년과 경주시청소년수련관	054-779-6170
21	경상북도	경주시청	임진섭	체육청소년과 경주시청소년수련관	054-779-6171
22	경상북도	칠곡군청	허상훈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054-979-5120

NO	시도	시군구	성명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23	경상북도	칠곡군청	한선혁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054-979-5122
24	경상북도	영주시	박혜화	영주청소년문화의집	
25	경상북도	영주시	백은숙	영주청소년문화의집	
26	경상북도	영주시	김경향	아지청소년야영장	
27	경상북도	상주시	박지숙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535-3511
28	경상북도	상주시	박영숙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	경상북도	영양군	권도원	영양군청소년수련원	054-680-5320
30	경상북도	영양군	김용희	영양군청소년수련원	054-680-5324
31	경상남도	진주시	하창은	평생학습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	055-749-2257
32	경상남도	진주시	은지영	평생학습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	055-749-2257
33	경상남도	진주시	한재철	평생학습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	055-749-2257
34	경상남도	진주시	강순일	평생학습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	055-749-2257
35	경기도	과천시	박경수	과천시청소년수련관	02-2150-3933
36	경기도	과천시	김선미	과천시청소년수련관	02-2150-3931
37	경기도	과천시	이효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02-2150-3932
38	경기도	양주시	신봉수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팀 양주시청소년수련원	031-8082-4152
39	경기도	양주시	김희애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팀 양주시청소년수련원	031-8082-4155
40	경기도	포천시	김운상	가족여성국 청소년팀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031-538-3392
41	경기도	포천시	김정민	가족여성국 청소년팀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031-538-3393
42	경기도	광주시	조계형	광주시청소년수련관	031-760-8763
43	경기도	광주시	권오숙	광주시청소년수련관	031-760-8766
44	경기도	광주시	유형근	광주시청소년수련관	031-760-8764
45	경기도	광주시	강은순	광주시청소년수련관	031-760-8765
46	경기도	광주시	이성미	광주시청소년수련관	031-760-8769

NO	시도	시군구	성명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47	경기도	통일부	김영이	교류 운영과한반도통일미래센터	031-839-7927
48	경기도	통일부	오제상	교류 운영과한반도통일미래센터	031-839-7926
49	경기도	통일부	이순원	교류 운영과한반도통일미래센터	031-839-7928
50	경기도	통일부	김윤희	교류 운영과한반도통일미래센터	031-839-7930
51	경기도	통일부	서미교	교류 운영과한반도통일미래센터	031-839-7929
52	충청남도	천안시청	이운선	여성가족과	041-521-5377
53	전라북도	고창군청	이성희	체육청소년사업소	063-560-8915
54	서울시	해당없음			
55	충청북도	해당없음			
56	전라남도	해당없음			
57	인천광역시	해당없음			
58	광주광역시	해당없음			
59	울산광역시	해당없음			
60	세종시	해당없음			
61	제주도	해당없음			